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5. 6. 12.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I. 제안이유 및 경과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2025년 5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II. 세입·세출 결산

1. 회계현황

2024년도의 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9개, 기금 18개가 설치·운영되었음

2.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요약

우리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은 2,920,306백만원, 총세출은 2,498,983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1,323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회계	세 입	2,321,120	2,379,998	2,505,015	2,417,333	2,423,669
	세 출	1,993,239	2,004,656	2,049,089	2,051,111	2,141,964
	결산상잉여금	327,881	375,343	455,925	366,222	281,705
기 타 특별회계	세 입	231,085	224,289	203,900	208,325	275,763
	세 출	147,942	112,706	84,583	73,162	191,954
	결산상잉여금	83,144	111,583	119,316	135,163	83,809
공 기 업 특별회계	세 입	229,016	232,849	217,567	218,909	220,874
	세 출	145,151	148,846	142,759	144,623	165,065
	결산상잉여금	83,865	84,003	74,808	74,286	55,809
총 계	세 입	2,781,221	2,837,136	2,926,482	2,844,567	2,920,306
	세 출	2,286,332	2,266,208	2,276,432	2,268,896	2,498,983
	결산상잉여금	494,890	570,928	650,050	575,671	421,323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2,781,221	2,837,136	2,926,482	2,844,567	2,920,306	1.2
세출(B)		2,286,332	2,266,208	2,276,432	2,268,896	2,498,983	2.2
잉여금 (A-B)	소 계	494,890	570,928	650,050	575,671	421,323	-3.9
	이 월 금	238,156	329,072	368,672	359,164	244,970	0.7
	보 조 금 실제반납금	19,422	27,581	38,434	22,627	23,629	5.9
	순 세 계 잉 여 금	237,312	214,276	242,944	193,880	152,724	-10.4

나. 세입·세출 결산 분석

(1)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세입은 2,920,3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739백만원(2.6%)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등 이전수입(48.8%), 지방세 등 자체수입(28.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3.0%)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전년대비(%)	2024	전년대비(%)
계		2,926,482	2,844,567	97.20	2,920,306	102.66
자체수입		782,786	781,996	99.90	823,118	105.26
	지 방 세	541,153	491,940	90.91	481,150	97.81
	세외수입	241,633	290,056	120.03	341,968	117.30
이전수입		1,520,809	1,367,687	89.93	1,426,005	104.26
	지방교부세	376,735	288,963	76.70	266,189	92.12
	조정교부금 등	244,878	200,201	81.76	213,566	106.68
	보 조 금	899,197	878,523	97.70	946,250	107.7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2,886	694,884	111.56	671,183	96.59

(2)세출결산

세출은 2,498,98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0,087백만원(10.14%)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1,030,794백만원(48.12%), 교통 및 물류 247,322백만원(11.54%), 환경분야 126,327백만원(5.89%)이고,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9.09%), 사회복지분야(7.62%), 교통 및 물류(3.64%) 분야임.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전년대비(%)	2024	전년대비(%)
계	2,276,432	2,268,896	99.67	2,498,983	110.14
일반회계	2,049,089	2,051,111	100.10	2,141,964	104.43
일반공공행정	126,145	111,020	88.01	121,110	109.09
공공질서및안전	23,291	14,887	63.92	15,113	101.52
교육	44,892	46,347	103.24	48,462	104.56
문화및관광	75,943	106,722	140.53	109,932	103.01
환경	132,235	146,096	110.48	126,327	86.47
사회복지	948,659	957,787	100.96	1,030,794	107.62
보건	55,348	14,872	86.49	46,062	96.22
농림해양수산	39,136	43,429	110.97	43,302	99.7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9,782	38,865	97.70	39,999	102.92
교통및물류	249,351	238,631	95.70	247,322	103.64
국토및지역개발	124,528	97,675	78.44	99,343	101.71
기타	189,779	201,780	106.32	214,198	106.15
특별회계	227,342	217,785	95.80	357,019	163.93
공기업특별회계	142,759	144,623	101.31	165,065	114.93
기타특별회계	84,583	73,162	86.50	191,954	262.32

<2024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 산 상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반 납	순세계 잉여금
계	2,923,666	2,920,306	2,498,983	421,323	41,362	13,500	190,108	23,629	152,724
일 반 회 계	2,431,602	2,423,669	2,141,964	281,705	27,730	8,718	133,530	22,905	88,822
공기업특별회계	217,771	220,874	165,065	55,809	1,963	3,459	9,469	223	40,695

상수도사업	97,431	97,795	68,544	29,251	600	273	5,920	131	22,327
하수도사업	120,340	123,079	96,521	26,558	1,363	3,186	3,549	92	18,368
기타특별회계	274,293	275,763	191,954	83,809	11,669	1,323	47,109	501	23,207
의료급여사업	8,034	8,055	7,972	83	—	—	—	2	81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185	184	175	9	—	—	—	9	0.2
수질개선	36,193	36,248	34,407	1,841	316	10	—	226	1,289
공유재산관리	58,181	58,751	43,036	15,715	10,858	—	2,495	—	2,362
교통사업	49,469	51,791	22,409	29,382	274	—	25,064	—	4,044
도시재정비 촉진	2	2	—	2	—	—	—	—	2
지하수관리	1,604	1,602	1,220	382	—	—	—	8	374
폐기물처리 시설	78,080	78,109	49,623	28,486	—	—	12,328	—	16,15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545	41,021	33,112	7,909	221	1,313	7,222	256	△1,103

3.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가. 이월사업비

(1)일반회계 : 314건/ 169,977,777,657원 (명시·사고이월 중복 4건)

- 명시이월 : 81건 / 27,730,155,590원
- 사고이월 : 56건 / 8,718,119,900원
- 계속비이월 : 181건 / 133,529,502,167원

(2)기타특별회계 : 34건 / 60,100,873,343원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1건 / 326,012,000원 (명사·사고이월 중복 1건)

– 명사이월 : 1건 / 315,701,000원

– 사고이월 : 5건 / 10,311,000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7건 / 13,353,447,910원

– 명사이월 : 2건 / 10,857,668,000원

– 계속비이월 : 5건 / 2,495,779,910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13건 / 25,337,593,420원

– 명사이월 : 1건 / 273,903,600원

– 계속비이월 : 12건 / 25,063,689,820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2건 / 12,328,215,000원

– 계속비이월 : 2건 / 12,328,215,000원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 11건 / 8,755,605,013원

– 명사이월 : 1건 / 221,384,200원

– 사고이월 : 2건 / 1,312,683,250원

– 계속비이월 : 8건 / 7,221,537,563원

나. 예비비

(1)일반회계 : 8건/ 495,637,480원 지출

○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05,186,000원으로서 8건 1,525,00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95,637,480원을 지출 하고 848,886,620원을 이월하였으며 180,481,9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 하였음

<예비비 사용 현황>

지출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8건		1,525,006,000	495,637,480	848,886,620	180,481,900
지역경제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45,000,000	13,500,000	-	31,500,000
회계과	손해배상예정금 감액 판결로 인한 계약보증금 반환	3,530,000	3,522,400	-	7,600
건축관리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42,000,000	18,900,000	-	23,100,000
도로건설과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종결(원고 일부 승소 및 화해권고 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	447,332,000	444,426,080	2,905,920	-
농업기술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4,844,000	2,844,000	-	2,000,000
도로관리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551,300,000	-	551,300,000	-
공원관리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220,000,000	-	96,125,700	123,874,300
진건읍 도시건축과	2024. 7. 16. ~ 7. 19.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211,000,000	12,445,000	198,555,000	-

(2)기타특별회계 : 1건/ 115,000,000원 지출

-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387,642,000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건 115,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5,000,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지출잔액은 0원임

(단위:원)

지출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1건		115,000,000	115,000,000	-	-
재산관리과	남양주시청 별관동 철거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권고액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115,000,000	115,000,000	-	-

4.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 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함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5건 / 261백만원

(1) 일반회계 : 5건 / 261백만원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5건			1,371,925,000	261,900,000	261,900,000	
의회사무국	의회 의정홍보	201-01 사무관리비	378,089,000	250,000,000	-	정보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의회 의정홍보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250,000,000	
일자리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	7,500,000	-	2차(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자산취득비 편성에 따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일부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마을기업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	7,500,000	
징수과	체납액고지	201-02 공공운영비	298,131,000	1,200,000	-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액 중 4대보험 사업자분 부담액 추가발생으로 예산부족액 발생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305,000	-	1,200,000	
복지행정과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4,400,000	3,000,000	-	보훈행사 추진 시 필수 물품에 대한 물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부득이한 계획변경으로 전용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22,000,000	-	3,000,000	
생태하천과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위탁	307-05 민간위탁금	598,950,000	200,000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추가 개최(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위탁	201-01 사무관리비	1,050,000	-	200,000	

(2) 특별회계 : 없음

다. 예산 이체

1) 일반회계 : 568건 / 307,458,383,020원

-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568건 307,458,383,020원을 이체

2) 기타특별회계 : 21건 / 16,152,614,683원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 21건 / 16,152,614,683원

*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21건 16,152,614,683원을 이체

5.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결산 결과 해당없음

Ⅲ. 기금결산

○ 2024년도 말 현재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서

-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373,074,645,442원에서
- 2024년도 조성액은 131,939,936,102원이며, 10,503,154,224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494,511,430,320원이 관리되고 있음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조 성 액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373,074,648,442	131,939,936,102	10,503,154,224	494,511,430,320
재난관리기금	48,720,989,089	5,055,143,520	1,682,407,730	52,093,724,879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	79,704,410	105,500,630	-	185,205,040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4,099,657,460	1,163,669,000	-	5,263,326,4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46,340,678,110	95,086,388,070	2,494,085,520	238,932,980,660
중소기업육성기금	24,790,671,032	3,260,973,780	479,480,210	27,572,164,602
신청사건립기금	65,667,751,970	20,000,860,390	-	85,668,612,360
식품진흥기금	671,393,030	231,654,750	215,221,490	687,826,290
남양주시자활기금	2,176,850,648	161,977,368	130,016,400	2,208,811,616
노인복지기금	2,057,173,084	63,707,810	61,900,000	2,058,980,894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8,146,886,350	1,898,972,550	-	20,045,858,900
양성평등기금	2,116,999,515	69,171,408	53,587,000	2,132,583,923
남양주시장학기금	8,187,320,519	440,939,449	365,109,340	8,263,150,628
체육진흥기금	6,166,788,189	190,735,715	121,733,550	6,235,790,354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629,487,512	516,492,919	540,500,000	9,605,480,431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119,838,719	2,147,046,153	1,957,531,000	10,309,353,872
옥외광고발전기금	1,834,376,095	109,331,740	1,022,365,880	921,341,95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822,325,440	937,258,580	746,216,104	20,013,367,916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445,757,270	500,112,270	633,000,000	2,312,869,540

IV.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 2024회계연도의 남양주시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24		202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757,244	8.41	845,454	9.50
투자자산	208,325	2.31	207,166	2.33
일반유형자산	564,777	6.27	522,946	5.87
주민편의시설	1,879,122	20.87	1,801,781	20.24
사회기반시설	5,565,883	61.81	5,493,777	61.70
기타비유동자산	30,050	0.33	32,740	0.36
자산총계	9,005,401	100.00	8,903,864	100.00
유동부채	30,036	61.73	29,459	63.55
장기차입부채	-	0.00	-	0.00
기타비유동부채	18,619	38.27	16,898	36.45
부채총계	48,655	100.00	46,357	100.00
고정순자산	8,039,904	89.76	7,851,151	88.64
특정순자산	267,771	2.99	235,602	2.66
일반순자산	649,236	7.25	770,754	8.70
순자산총계	8,956,746	100.00	8,857,507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9,005,401	-	8,903,864	-

- ▶ 2024회계연도 말 남양주시의 자산은 9,005,401백만원으로 전년도 8,903,864백만원보다 101,537백만원(1.14%) 증가
 또한 부채는 48,655백만원으로 전년도 46,357백만원보다 2,298백만원(4.96%) 증가

[재 정 운 영 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3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I. 사업순원가	1,916,970	1,028,868	888,102	-	888,102	1,799,911	945,938	853,973	-	853,973
II. 관리운영비	-	-	301,756	(69,048)	232,708	-	-	288,652	(67,901)	220,751
III. 비배분비용	-	-	54,115	(2,727)	51,388	-	-	52,576	(1,155)	51,421
IV. 비배분수익	-	-	129,957	(2,727)	127,230	-	-	74,845	(1,155)	73,690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	-	1,114,016	(69,048)	1,044,968	-	-	1,120,356	(67,901)	1,052,455
VI. 일반수익	-	-	1,145,763	(69,048)	1,076,715	-	-	1,177,603	(67,901)	1,109,702
VII. 재정운영결과 (V-VI)	-	-	(31,747)	-	(31,747)	-	-	(57,247)	-	(57,247)

- ▶ 2024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사업순원가는 888,102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232,708백만원), 비배분비용(51,388백만원) 및 비배분수익(127,230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44,968백만원임

[재 정 운 영 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3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248,509	11.29	238,490	11.51
운영비	613,039	27.85	595,571	28.74
정부간이전비용	80,415	3.65	73,010	3.52
민간등이전비용	1,138,724	51.74	1,051,087	50.73
기타비용	120,379	5.47	113,925	5.50
비용총계	2,201,066	100.00	2,072,083	100.00
자체조달수익	784,860	35.15	745,384	35.01
정부간이전수익	1,438,926	64.44	1,376,776	64.66
기타수익	9,027	0.41	7,170	0.33
수익총계	2,232,813	100.00	2,129,330	100.00
재정운영결과	(31,747)	-	(57,247)	-

- ▶ 또한 2024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은 인건비 248,509백만원(11.29%), 운영비 613,039백만원(27.85%), 정부간이전비용 80,415백만원(3.65%), 민간 등 이전비용

1,138,724백만원(51.74%), 기타비용 120,379백만원(5.47%)등으로 구성됨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784,860백만원(35.15%)이고, 정부간이전수익 1,438,926백만원(64.44%), 기타수익 9,027백만원(0.41%)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총비용은 2,201,06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98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2,232,81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483백만원 감소함. 이 중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438,92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2,150백만원 증가.
- ▶ 2024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운영차액(수익-비용)은 31,74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500백만원 감소

2. 채권 현재액

-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332,562,444원에서 당해연도에 1,148,645,240원이 발생하고 1,010,593,97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470,613,714원 임

(단위: 원)

회계별 /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1,332,562,444	1,148,645,240	1,010,593,970	11,470,613,714
일반회계	7,318,080,000	277,000	114,210,000	7,204,147,000
남양주시자활기금	365,934,654	84,929,330	135,945,060	314,918,924
농업특산품육성기금	3,648,547,790	1,063,438,910	760,438,910	3,951,547,790

3. 채무결산

- 시에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0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이 발생·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0원이 관리되고 있음

- 남양주시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는 예산 외 의무부담 1건, 59,000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음

(단위:백만원)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비용 부담 협약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	59,000	164,900	2013-10-14 ~ 2017-04-13	차입금 등 상환 후 잔액 비용부담 ('24~' 67년)

V. 성과보고서 결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당해 회계연도의 전략목표(20개), 정책사업목표(13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목표 달성현황

(단위:개)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38	217	29	179	9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의회사무국	1	1	2	0	2	0
시민시장담당관	1	3	3	2	1	0
시민안전관	1	3	8	1	7	0
홍보담당관	1	1	3	0	3	0
감사관	1	1	2	0	2	0
민원담당관	1	1	3	0	2	1
기획조정실	1	17	23	4	18	1
재정경제국	1	14	23	4	17	2
복지국	1	15	23	0	22	1
문화교육국	1	18	25	5	19	1
환경국	1	14	23	2	20	1
도시국	1	12	13	0	13	0
교통국	1	7	14	1	13	0
미래도시추진단	1	6	8	1	7	0
남양주보건소	1	5	9	1	8	0
남양주풍양보건소	1	2	4	2	2	0
농업기술센터	1	5	12	1	9	2
상하수도관리센터	1	1	1	0	1	0
도로관리사업소	1	5	6	0	6	0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	7	12	5	7	0
외부조안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다산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별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읍면동	0	0	0	0	0	0

VI.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19,209건 16,838,589m² 4,204,082,300,896원
- 건물 391건 457,219m² 695,905,628,640원
- 입목죽 657,042건 9,986,987,919원
- 공작물 19,427건 894,164,119,457원
- 선박 등 172건 371,632,940,610원으로

▶ 총 6,175,771,977,522원 상당이며, 이를 용도로 구분하여 결산하면
행정재산은 5,765,526,730,199원, 일반재산은 133,847,704,353원,
건설중인재산은 276,397,542,970원임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688개 34,828,883,140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121개 870,138,315원이 증가
36개 288,001,335원이 매각 및 폐기처분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3,773개

35,411,020,120원의 물품이 관리되고 있음

(단위:개, 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 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3,688	34,828,883,140	121	870,138,315	36	288,011,335	3,773	35,411,020,120

VII. 심사 시 고려사항

○ 결산검사위원 개선·권고사항 목록

구 분	제 목	해 당 부 서
1	성과지표(측정산식)의 합리적인 설정 권고	시민시장담당관
2	국·도비보조금등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	노인복지과 외 6개 부서
3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 부적정	행정지원과
4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최소화 및 사유 부적정	부동산관리과 외 3개 부서
5	세입목 착오결의 최소화	지역경제과 외 3개 부서
6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 추진 철저	건축관리과
7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부적정	건축관리과
8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 철저	노인복지과 외 10개 부서
9	예산사업의 계획수립 철저	인사과 외 7개 부서
10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	시민안전관 외 19개 부서

구 분	제 목	해 당 부 서
11	지방세 수입 확충방안 수립 권고	세정과
12	합리적인 세입추계 권고	세정과
13	사업비 집행잔액 최소화 권고	인사과 외 3개 부서
14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체육과
15	예산편성 현실화 및 예산불용 최소화 권고	기후에너지과
16	지난년도수입 관련 세입예산 편성 철저	징수과 재물관리과

Ⅷ. 종합의견

1. 결산검사위원 총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남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2024회계연도 남양주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남양주시의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923,6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2,920,306백만원)의 비율은 99.9%,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2,498,983백만원)의 비율은 85.5%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72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2%)으로 확인됩니다.

-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2.6% 증가, 세출결산액은 10.1%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1.1% 증가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 2,141,964백만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10,308백만원(48.1%)으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통 및 물류분야가 247,322백만원(11.5%), 기타 214,198백만원(10.0%)순입니다.
 - 이번 2024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결산을 보면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4,293백만원, 세입결산액 275,763백만원, 세출결산액 191,95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0%)이며,
기금의 경우 조성액(전년도말 현재액+현년도 조성액) 505,014백만원, 사용액 10,503백만원(조성액 대비 사용비율 2.1%),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4,51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5% 증가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9개 및 기금 18개의 운용은 목적사업을 위해 5년 기한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법정 의무특별회계(1개) 및 법정 의무기금(6개)을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통·폐합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양주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교부세 등의 의존수입이 세입재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탄력적인 재원 활용이 더욱 중요하며, 시의 슈퍼성장과 민생편익 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부과·징수 및 새로운 세수를 확보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매년 강조해 온 사항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법률상 저촉 여부 확인,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 중 변동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년간 진행이 더디거나 중단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사업 일몰 등을 검토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남양주시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바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총평과 같이
- 남양주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교부세 등의 의존수입이 세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다양한 자원 발굴 노력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 대규모 사업들이 세밀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정치 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됨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일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함
- 따라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 대해 면밀한 관심과 감시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